

영등포구의회
제20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용범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7. 10. 23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81호로 2017년 10월 13일 김용범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만족도 향상과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영등포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
(안 제7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,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와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제7조(시설의 개방)을 안 제7조(시설의 개방 및 이용)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9조제2항에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 시 타 시·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음.
- 검토결과,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 확대로 이어지고,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나, 우리 구민이 인접 시·구의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 시, 상호 호혜적 이용의 기회가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,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